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3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배진교·장혜영·강은미

이은주・류호정・최강욱

허종식 · 강민정 · 심상정

김진애 의원(10인)

제안이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의 위험성을 목도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 아짐에 따라 이에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행위제한을 조건 부로 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됨.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적합업종까지 진출하여 이들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일감몰아주기와 결합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있음.

이에,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보험회사의 의결 권 예외규정 삭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 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 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상장 20% 및 비상장 40% 이상에서 상장 30% 및 비상장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위한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부칙 제2조제5항).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이 법 시행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통지받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해소하지 못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부칙 제3조).
-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당해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등을 결의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주식발행총수의 15%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을 폐지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삭제).
-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특수관계인 합산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가 소유한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와 그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로 수정하고, 긴급성·효율성·보안성 등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23조의2).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71조제1항 삭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을 "자본총액(대차대 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본총액의 2배를"을 각각 "자본총액을"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손자회사는"을 "자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손자회사"를 각각 "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손 자회사가"를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제4호에 따라 손 자회사"를 "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로. "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증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을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지주회사·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등"을 "주식소유현황・재무상 황・내부거래에 따른 수익현황 등"으로,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

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 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을 "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 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해당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 제9조

의3"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중 "자본총액의 2배를"을 "자본총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국내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국내계열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부당한"을 "정당한 이유없이"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형 또는 기준"을 "유형 및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이하 "종전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총액을 초 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종전지주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이하 "종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이하 "종전손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 ④ 종전지주회사, 종전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증손회사(이하 "종전증손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 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

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2 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의 경우에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순환출자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 제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한 등) ① (생 략)	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	1. <u>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u>
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	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	<u>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u>
를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	
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	
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u>자본</u>	자본총액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u> </u>
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	
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	자본총액을
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100분의 50
[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	
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 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 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 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 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 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 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 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사. (생 략)

3. (생략)

가. ~ 라. (생 략)

4. • 5.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u><삭 제></u>

-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 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 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 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 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 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 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 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 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

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 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 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 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 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 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_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
 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
 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
 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을 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 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 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 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 다)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 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 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 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 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

 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 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 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 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④ 일반지주회사의 <u>손자회사는</u>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u>손자회사</u>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u>손자회사</u>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4	 :	자회사는
1. <u>자회사</u> -		
	<u></u> 자회사-	

경우

- 2. (생략)
-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u>손자회사</u>가 회사분할로 인하 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 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 인 경우
- 4. <u>손자회사가</u> 국내계열회사(금 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 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 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 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u>증손회사</u>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u>증손회사</u>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경우

2. (현행과 같음)
3
<u> 자회사</u>
4.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
⑤ <u>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u> -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
⑤ <u>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u> <u>손자회사</u>
⑤ <u>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u> -
⑤ <u>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u> <u>손자회사</u>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 <u>손</u> 자회사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

- 2. (생략)
- ⑥ (생략)
- ⑦ <u>持株會社는 大統領令</u>이 정 | ⑦ <u>지주회사는 대통령령-----</u>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u>지주회</u> 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 사·자회사 및 손자회사-----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 | 다)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 한다.

<신 설>

- 2.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식소유현황 • 재무상황 • 내부거 래에 따른 수익현황 등-----

-----공정거래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순환출자에 대한 의결 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 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 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 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 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 의 議決權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國內系列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 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 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

<u>하지 아니한다.</u>	
第11條(금융회사・보험회사 등	킺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①	_
	_
	_
	-
	-
	_
	-
	_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 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 사로의 양도

<신 설>

第16條(시정조치 등) ① 公正去來 | 第16條(시정조치 등) ① -----委員會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 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 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 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법인등이 해당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제9조의2,</u>	제9조의3

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 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 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 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 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같 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②·③ (생 략)
- 第17條(課徴金) ① ~ ③ (생략)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

<u>.</u>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17條(課徴金)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 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u>자본총액의 2배를</u> 초과한 부채액
- 2.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100분의 40</u>
- 3. (생략)
-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

1
<u></u> 자본총액을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100분의 50</u>
3. (현행과 같음)
<삭 제>

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
 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
 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
 는 100분의 20

<u>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u> <u>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u> <u>00분의 40</u>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 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 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 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 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

	<u>정당한 이유</u>
	없이
	<u>ਜ</u> ੰ
	<u>형 및 기준</u>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	<u><삭 제></u>
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第66條(罰則) ① 다음 각 호의 어	第66條(罰則)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 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의
	결권을 행사한 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

第71條(告發) ① 第66條(罰則) 및 第71條(告發) <삭 제> 第67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 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 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